

『무배당』

교 통 안 전 공 제 약 관

목 차

■ 상품요약서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상품요약서(1종: 운전자용).....5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상품요약서(2종: 비운전자용).....17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운전자용).....27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 (2종: 비운전자용).....51

■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특별약관

-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75
-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77
-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79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82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85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87
-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89
-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92
- 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95
- 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98
- 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100
- 강력범죄발생위로금담보 특별약관.....103
- 면허정지위로금담보 특별약관.....105
- 면허취소위로금담보 특별약관.....106
- 벌금담보 특별약관.....108
- 생활안정지원금담보 특별약관.....110
- 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111
- 견인비용담보 특별약관.....113
- 형사합의지원금담보 특별약관.....114
- 이론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116
-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118

[별표 1] 장해분류표.....119

[별표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38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상품요약서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1종 : 운전자용) 상 품 요 약 서

◆ 문답식 상품해설(Q & A)

Q1) 이 상품의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1종은 자가용운전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2종은 비운전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비운전자로 선택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2종으로 가입되며,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2) 무배당 교통안전공제(1종:운전자용)의 각 담보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2) 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는 기본계약을 가입하신후 나머지 특약담보들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해, 교통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교통상해

[상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교통상해]

「운전중 상해 + 탑승중 상해 + 비탑승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교통안전공제(1종:운전자용)의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3년, 5년, 7년, 10년만기
가입가능연령	만 18세 ~ 75세

☞ 이 상품은 피공제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 공제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에 대하여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공제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다만, 공제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최저보증이율은 연 2.0%)

◆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1. 공제금 지급사유

1) 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만기환급금		만기생존시(80%이상 후유장해시 제외)	적립금

- 주) 1.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계약이 소멸되며 이때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선택계약

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년1,000만원 × 5회

다)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교통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택1]

- 주) 교통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라)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주)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마) 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바)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시	년 1,000만원 × 5회

사)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택1]

주) 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아) 강력범죄발생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0만원

자)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일당 1만원 (1사고당 60일한도)

차)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하여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00만원 (1사고당)

카) 벌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로 벌금부담시	2,000만원 한도 (1사고당)

타)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	1일당 1만원 (180일한도)

파) 방어비용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00만원 (1사고당)

하) 견인비용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자동차가 약관에 정한 가동불능 상태가 된 경우	10만원 (1사고당)

거)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6주이상 진단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 10대 중과실 사고(음주운전, 약물복용, 무면허제외)로 피해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42일 이상(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1인당)
피해자 사망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가용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을 사망케 한 경우	2,000만원 (1인당)

너)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약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특별약관 포함)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통약관 계약소멸시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도 소멸합니다.

2. 지급제한 사항

가) 「교통상해의료비」와 「상해의료비」는 의료실비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공제 및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나) 교통상해의료비와 상해의료비는 중복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 「상해소득보상금」담보 특약은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약 가입시 가입가능합니다.

라)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공제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비교표

▷ 가입기준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월납, 기본계약 2,000만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벌금 2,0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형사합의 지원금 1,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만원, 견인비용 1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 공제료 예시

구분	보장명		보장금액
기본 계약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2,000만원
	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1,600만원 한도
선택 계약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		2,000만원 한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5년간 매년 1,000만원
	신주말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한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 소득보상금		5년간 매년 1,000만원
	상해 의료비		200만원 한도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벌금		2,000만원 한도
	생활안정지원금		2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견인비용		10만원
	형사합의 지 원 금	6주이상 진단시	500만원
		피해자 사망시	2,000만원
보장부분 총 공제료			20,200원

◆ 공제료 산출기초

1. 공제료 구성

공제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만약의 사고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위험공제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공제료 그리고 농협의 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2.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농협이 장래에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공제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일정한 이율로써 운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운용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1종:운전자용)의 보장부분 및 특별약관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이 공제상품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이 공제는 적립순공제료에 대해 이 공제의 "공시이율"(2007년 9월 현재 5.3%)에 연동되는 상품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농협의 운용자산이익율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농협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해약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 × 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 × 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 × 95%
3년이상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1종:운전자용)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로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농협공제가 정한 이율로 하며, 농협공제는 직전 6개월간 농협공제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수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수익률, 시장금리,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예정위험율

예정위험율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공제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율이 높으면 공제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공제료는 내려갑니다.

4.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저희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제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교통안전공제(1종:운전자용)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공제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농협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공제의 순공제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미경과공제료를 더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공제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공제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월납입 공제료 30,200원, 기본계약 2,000만원,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벌금 2,000만원, 방어비용 200만원, 형사합의지원금 1,0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2만원, 견인비용 10만원, 면허취소위로금 100만원, 면허정지위로금 1만원,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 공제료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1년도	362,400	44,835	46,264
3년도	1,087,200	271,139	286,283
5년도	1,812,000	510,811	554,428
7년도	2,536,800	747,731	837,036
10년도	3,624,000	1,082,422	1,279,417

주)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공제료(영업공제료에서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공제료, 부가공제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공제의 공시이율(2007년 9월 현재 5.3%)를 적용한 금액과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2종 : 비운전자용) 상 품 요 약 서

◆ 문답식 상품해설(Q & A)

Q1) 이 상품의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1종은 자가용운전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2종은 비운전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비운전자로 선택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2종으로 가입되며,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한 교통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Q2) 무배당 교통안전공제(2종:비운전자용)의 각 담보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A2) 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는 기본계약을 가입하신후 나머지 특약담보들을 고객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금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3) 상해,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상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 비운전 중 교통상해]

「탑승중 상해 + 비탑승중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의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교통안전공제(2종:비운전자용)의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3년, 5년, 7년, 10년만기
가입가능연령	만 15세 ~ 75세

 이 상품은 피공제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2. 상품구조

① 계약형태

- 공제기간 : 3년, 5년, 7년, 10년
- 납입기간 : 일시납, 전기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연납, 6월납, 3월납, 월납

②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에 대하여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공제의 "공시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한 금액. 다만, 공제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최저보증이율은 연 2.0%)

◆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1. 공제금 지급사유

1) 기본계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만기환급금		만기생존시(80%이상 후유장해시 제외)	적립금

주) 1.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계약이 소멸되며, 이때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2.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시 사망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2) 선택계약

가)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소득보상금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년1,000만원 × 5회

다)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택일]

주)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라)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신주말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주) 신주말 :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마) 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구 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공제금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시	1,000만원
후 유 장 해 공제금	고도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시	1,000만원
	일반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3%~79% 후유장해시	30만원 ~ 790만원

바)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시	년 1,000만원 × 5회

사) 상해의료비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한도)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일상생활 중 상해 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부터 180일이내에 소요된 본인부담 의료실비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가입금액 한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택일]

주) 상해의료비는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 비적용시(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 보상

아) 강력범죄발생위로금 담보 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만원)

지급사유	지급금액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00만원

자)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약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특별약관 포함)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 보통약관 계약소멸시 특별약관에 대한 계약도 소멸합니다.

2. 지급제한 사항

가)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와 「상해의료비」는 의료실비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공제 및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와 상해의료비는 중복하여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 「상해소득보상금」담보 특약은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특약 가입시 가입 가능합니다.

라)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마)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공제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제료 비교표

▷ 가입기준

남자, 상해1급, 비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월납, 기본계약 2,000만원, 신주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 공제료 예시

구분	보장명	보장금액
기본계약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고도후유장해	2,000만원
	자동차 비운전중교통상해 일반후유장해	1,600만원 한도
선택계약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5년간 매년 1,000만원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한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상해 소득보상금	5년간 매년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한도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보장부분 총 공제료		11,820원

◆ 공제료 산출기초

1. 공제료 구성

공제계약자가 납입하는 공제료는 만약의 사고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위험공제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저축공제료 그리고 농협의 경비를 위한 부가공제료로 구성됩니다.

2. 예정이율

예정이율이란?

농협이 장래에 공제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공제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적립금을 일정한 이율로써 운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운용이율을 예정이율이라 합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2종:비운전자용)의 보장

이 공제상품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은 연복리 4.0%입니다.

이 공제는 적립순공제료에 대해 이 공제의 "공시이율"(2007년 9월 현재 5.3%)에 연동되는 상품이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농협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농협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해약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표>

경과기간별	적용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 × 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 × 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 × 95%
3년이상	공시이율

공시이율이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2종:비운전자용)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로서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농협공제가 정한 이율로 하며, 농협공제는 직전 6개월간 농협공제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이익률을 기준으로 한 실적이익률, 시장금리, 투자지출비용 및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예정위험율

예정위험율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공제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율이 높으면 공제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공제료는 내려갑니다.

4. 예정사업비율

예정사업비율이란?

저희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제료 중 일정비율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사업비율이라 합니다.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무배당 교통안전공제(2종:비운전자용)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공제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 기준

농협은 농림부장관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공제의 순공제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차감한 금액에 미경과공제료를 더하여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공제는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써 계약자가 납입한 공제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공제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공제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3.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남자, 상해1급, 비운전자, 10년납 10년만기, 월납공제료 21,820원, 기본계약 2,000만원, 신주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2,000만원, 자동차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만원, 상해 소득보상금 1,000만원, 상해의료비 200만원, 강력범죄위로금 200만원

(단위:원)

경과 기간	납입 공제료	예상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1년도	261,840	44,835	46,264
3년도	785,520	271,139	286,283
5년도	1,309,200	510,811	554,428
7년도	1,832,880	747,731	837,036
10년도	2,618,400	1,082,422	1,279,417

주)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이 계약의 적립부분 순공제료(영업공제료에서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보장공제료, 부가공제료(사업비 등)를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이 공제의 공시이율(2007년 9월 현재 5.3%)를 적용한 금액과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향후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공제료 실제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2.0%로 합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보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
(1종 : 운전자용)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 통 약 관 (1종 : 운전자용)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가입금액
2.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19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이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용한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항에 따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 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납입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공제료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

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1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고의
2.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
6.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 【사망공제금】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 【후유장해공제금】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고도후유장해공

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이 공제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 × 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 × 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 × 95%
3년이상	공시이율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 받은 자(이하 "직원"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 【공제금의 지급】

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3조 【환급금의 지급】

① 농협은 계약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농협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

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공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 【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 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
(2종 : 비운전자용)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 통 약 관 (2종 : 비운전자용)

제1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② 농협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가입금액
2.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사망공제금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제19조에 의한 해약환급금(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이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4조(사망공제금),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 농협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농협이 적용한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2항에 따라 공제대상자(피공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 【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중기】

- 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 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제2관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납입내역을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0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1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공제료에 대하여 이 공제의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및 제25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공제금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2.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 포함)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함)

제1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고의

2.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질병
 6.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아래의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④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14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15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애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애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애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애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16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7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공제금은 고도후유장애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애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애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제1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약관에 정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제19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공제료에서 정해진 사업비와 보장부분 공제료를 차감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는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이 공제의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복리 2.0%로 합니다.

경과기간	이율
1년미만	공시이율 × 85%
1년이상 ~ 2년미만	공시이율 × 90%
2년이상 ~ 3년미만	공시이율 × 95%
3년이상	공시이율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배당금의 지급】

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및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2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농협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4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6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공제금 지급등의 절차

제27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 【공제금을 받는 자의 지정】

계약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8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제14조(사망공제금)의 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속인으로, 제15조(후유장해공제금)경우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로 합니다.

제2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0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1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농협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2조 【공제금의 지급】

- ① 농협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 【환급금의 지급】

- ① 농협은 계약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은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 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공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보험회사(보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 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0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다.

제39조 【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농협(지사무소 및 공제사업단 포함) 제작의 공제 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특 별 약 관

1.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공제금) 및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사망공제금】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농협이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애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애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교통상해의료비(이하 「교통상해의료비」라 합니다)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 ④ 제1항의 경우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교통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교통상해의료비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치료비지불 영수증 원본, 진료비청구 명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4.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 추가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공제금) 및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2종 : 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 【사망공제금】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공제금】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장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5.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농협이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

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에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라 합니다)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의 경우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의료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

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치료비지불 영수증 원본, 진료비청구 명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7. 신주말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공제금) 및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의 신주말에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사망공제금】

-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신주말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비운전자용)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

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공제금) 및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의 신주말에 보통약관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신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비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공제기간 중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인한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 【사망공제금】

- 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자동차 비운전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9.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후유장해공제금이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계약의 후유장해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4조(사망공제금) 및 제5조(후유장해공제금)의 제1항에서 정한 사망공제금 또는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 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5조 【후유장해공제금】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0. 상해 소득보상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농협이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 소득보상금을 지급하였거나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 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정한 사유로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3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4조 【소득보상금】

- ① 농협은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2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5년간 매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 금액을 상해소득보상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소득보상금 지급을 위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애분류표에 장애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④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애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제1항의 상해소득보상금은 매년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농협은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1. 상해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농협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상해의료비】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④ 제1항의 경우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부터 계속중인 치료에 대한 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해의료비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4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치료비지불 영수증 원본, 진료비청구 명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5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2. 강력범죄발생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강력범죄발생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 및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의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및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행)
2. 의사진단서 등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 2종:비운전자용)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때에는 면허정지 기간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일당액을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면허정지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유가 교통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면허정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를 차감한 기간을 말합니다. 단,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면허정지기간을 감경받지 못하여 면허정지 처분기간 이후에 경찰서의 행정처분조회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가입금액을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면허취소위로금으로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5. 벌금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보험 및 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농협은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 생활안정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

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구속기간 동안 최고 180일을 한도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에 정한 사항 중 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방어비용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8. 견인비용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 중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가용 자동차가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약의 공제가입금액을 견인비용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7. 차량의 자체결함, 노후화, 정비불량에 기인하는 가동불능
8. 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운전회피

제3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운전자용)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약관)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중 이론자동차를 제외합니다) 사고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타인(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 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중 7., 8.은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공제대상자(피공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합니다)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상 치료(입원 및 통원을 포함합니다)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42일 이상 진단시	타인 사망시
500만원	2,000만원

②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론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함

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 : 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의한 사고
2.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5.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공제계약자, 공제대상자(피공제자) 또는 공제금을 받는 자(수익자)가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농협은 보통약관 제31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와 "피해자의 진단서" 및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0.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공

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 2종:비운전자용)(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8조(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④ 공제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공제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계약자 또는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을 주된 판매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농협은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1.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공제료 납입】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

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공제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 【공제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료 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배당 교통안전공제 보통약관(1종:운전자용, 2종:비운전자용)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 1]

장 해 분 류 표

장애 부위	장애의 분류	지급율
눈의 장애	1) 두눈이 멀었을 때 2) 한눈이 멀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4) " 0.06 " 5) " 0.1 " 6) " 0.2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 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0 50 35 25 15 5 10 5 10 5
귀의 장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45 25 15 5 10
코의 장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 한 장애를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 의 장애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80 40 20 10 5 20 10 5

장애 부위	장애의 분류	지급율
외모의 추상 (추한모습) 장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5
척추 (등뼈)의 장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40 30 10 50 30 15 20 15 10
체간골의 장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팔의 장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다리의 장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장애 부위	장애의 분류	지급율
손가락의 장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5 15 10 30 10 5
발가락의 장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0 30 10 5 20 8 3
흉·복부장기/ 비뇨생식기의 장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75 50 20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10~100 100 70

장애 부위	장애의 분류	지급율
신경계 정신행동 장애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별표 1]장애분류표에 대한 해설

1. 총 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애 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지급율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손가락 ⑪발가락 ⑫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신경계·정신행동 등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II 장애부위별 장애분류 판정기준

1. 눈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분류 판단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2-1. 컷바퀴의 결손

- 1) “컷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컷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컷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ㄱ, ㄴ, ㄷ)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ㄷ, ㄹ)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1.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2.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5-3.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 \times 10\text{cm}$ (1/2 크기는 40cm^2 , 1/4 크기는 20cm^2), 6~11세의 경우는 $6 \times 8\text{cm}$ (1/2 크기는 24cm^2 , 1/4 크기는 12cm^2), 6세 미만의 경우는 $4 \times 6\text{cm}$ (1/2 크기는 12cm^2 , 1/4 크기는 6cm^2)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 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 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관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8-1.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 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익스션)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9-1.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 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 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분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도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 있는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분류 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 (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불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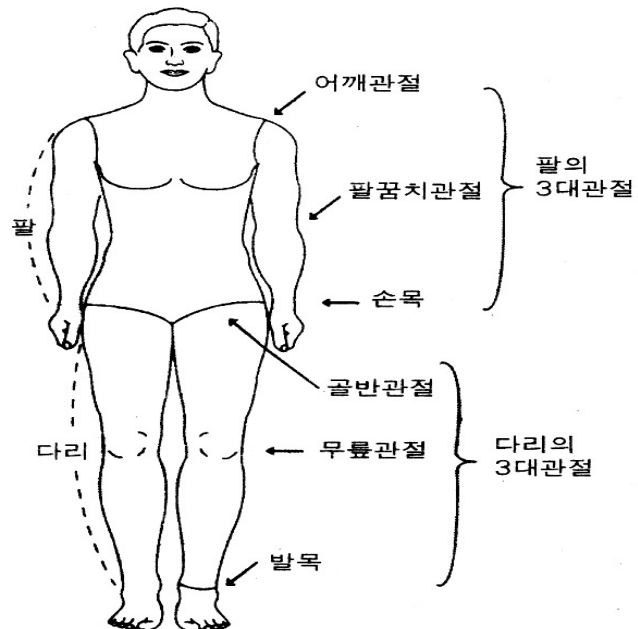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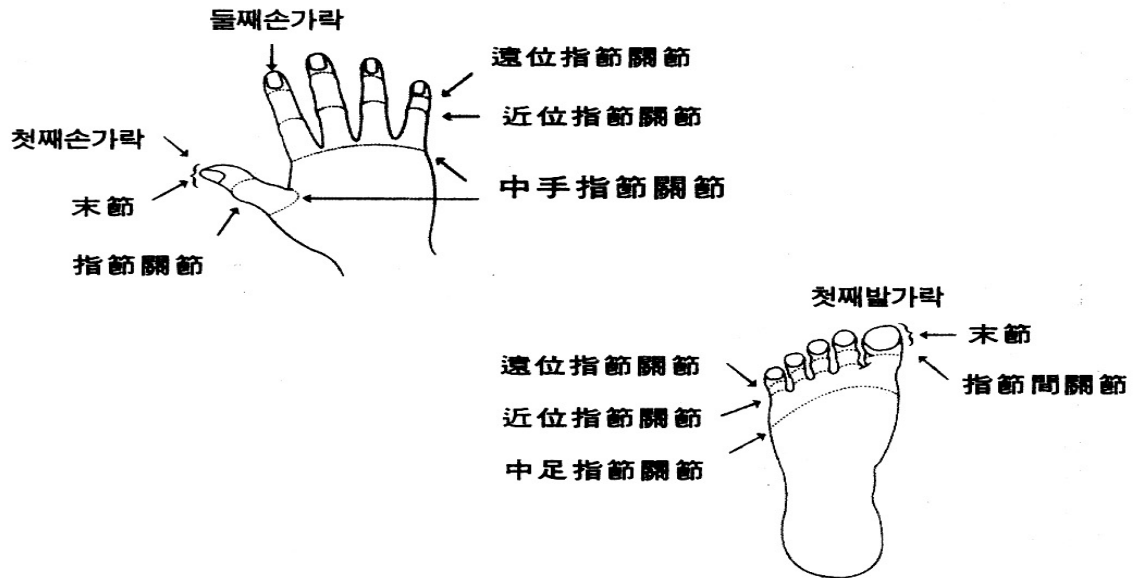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장애분류표에 대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身體部位의 說明圖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제1항 제22조(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내지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60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 시기,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